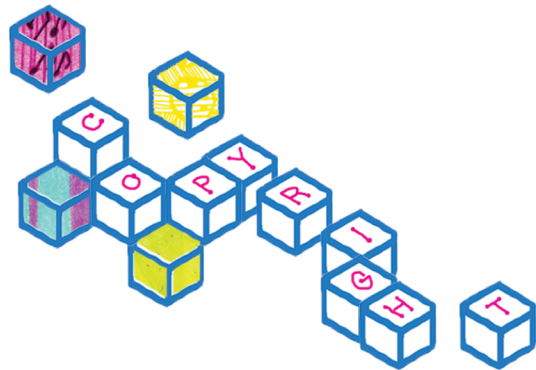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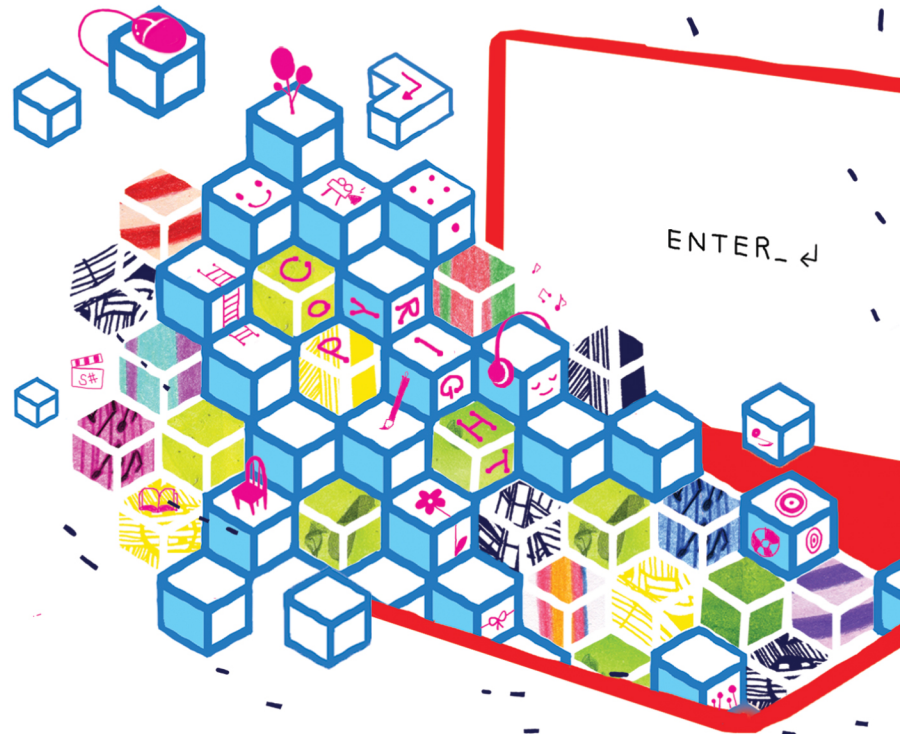
비매품

9 788978 20254 1
ISBN 89-782-0254-3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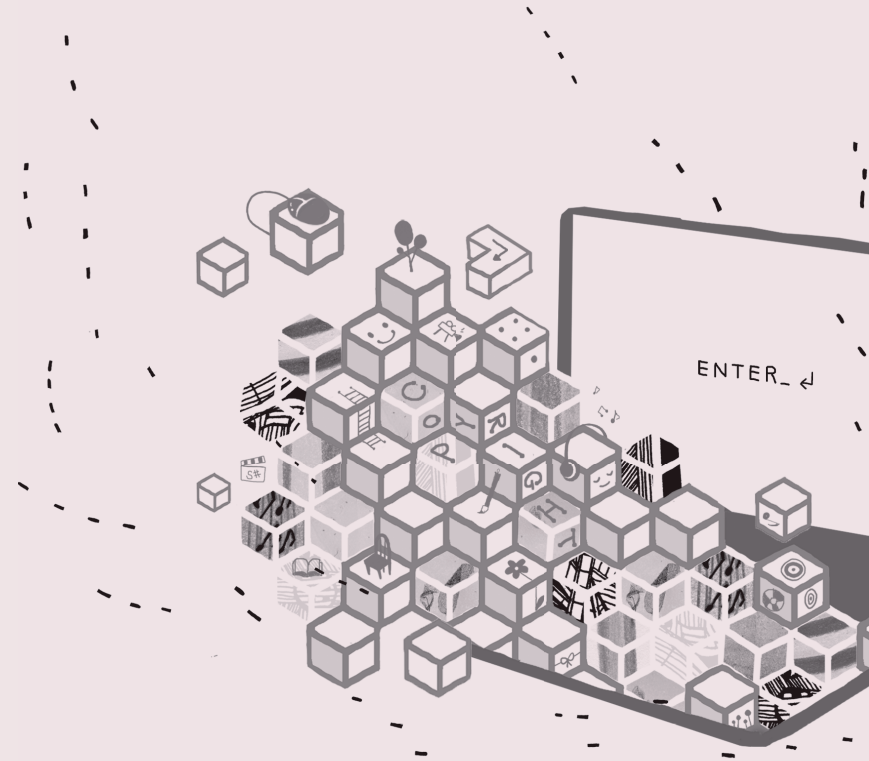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





목 차

개정 저작권법 해설	06
저작권법	92
저작권법 시행령	138
저작권법 시행규칙	166
폐지 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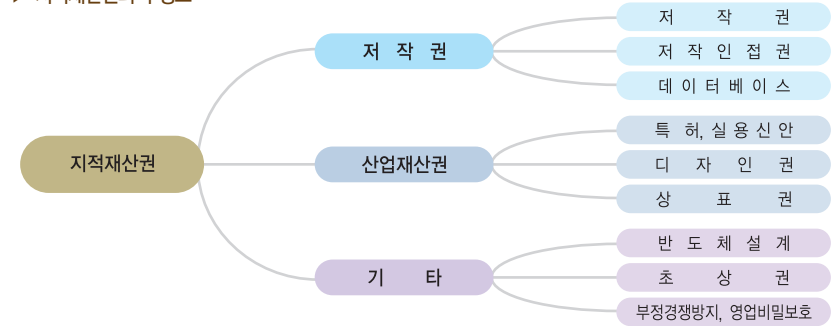
* 개정 저작권법 해설

- I. 저작권법 개요 07
- II. 제·개정 연혁 15
- III. 개정 배경 및 이유 17
- IV. 추진경과 18
- V. 주요 개정내용 19
- VI. 기대효과 90

I. 저작권법 개요



▶ 지적재산권의 구성도



1.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저작권 보호의 체계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보호의 제한과 예외	저작인접권자	권리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2차적저작물 • 편집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 작사·작곡가 - 디자이너 - 화가 - 사진사 - 설계사 - 안무가 - 프로그래머등 •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 기업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인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 지적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2차적저작물 작성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기간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법정 허락 • 저작권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목적 복제 - 사적복제 -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연자 •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 • 기타 권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 출판권자 • 프로그램배타적 발행권자 • 영상물제작자 • 저작권위탁관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업 • 대리중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 - 금지명령 • 형사구제
규율-법(저작권법, 국제조약); 집행-제도(등록, 법원 등); 실효성-기술, 계약, 사회규범(윤리·도덕)					

2. 저작물

가. 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나. 저작물의 종류

-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 음악저작물
- ▶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 ▶ 영상저작물
-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 기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

3. 저작자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자연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인 등(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을 저작자로 의제하고 있음. 이처럼 법인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을 특별히 '업무상저작물'이라 함

4. 저작권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짐.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임

가. 저작인격권

- ▶ **공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 ▶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실명, 예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나. 저작재산권

- ▶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다운로드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권리가 포함됨
- ▶ **공연권** :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이나 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권리이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이 포함됨
- ▶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 **방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
 - **전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들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권을 포함함
 - **디지털음성송신권**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전송 제외)
- ▶ **전시권** : 미술·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
- ▶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 ▶ **대여권** :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
- ▶ **2차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5. 저작권의 발생 및 법적 성질 등

가.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 또는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아니함(무방식주의). 이런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차이가 있음

나. 저작권의 법적 성질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며, 준물권성이 있음.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권리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함

다. 저작권의 양도성

저작권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음(일신전속성)

6.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직·간접적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이 창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자의 독점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 문화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됨(출처 표시가 의무화 된 경우가 있음)

▶ 일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

- 재판절차, 입법, 행정 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제23조)
-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의 진술등의 이용(제24조)
-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도서관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등(제31조)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등(제33조)
-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제101조의3)

-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한 복제(제1호)
- 학교 교육 목적 등을 위한 복제 또는 배포(제2호)
-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복제(제3호)
- 입학시험 기타 검정 목적의 복제 또는 배포(제4호)
-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연구·시험 목적의 복제(제5호)

7.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 원칙 :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50년
- ▶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 업무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 영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 프로그램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 공동저작물 :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 ▶ 보호기간의 기산(起算) :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함

8. 법정허락 제도

법정허락 제도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하는 제도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9.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법률적 이익이 발생함

▶ 추정력

- 등록된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창작년월일, 공표연월일로 추정.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음
- 과실 추정(입증책임의 전환) :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를 당했을 때 과실(過失)에 의하여 침해 받은 것으로 추정

▶ **대항력** :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 놓는 경우 나중에 이중 양도 혹은 출판권 설정이 발생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됨

10. 저작인접권

가. 개념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 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임

나. 저작인접권자

- ▶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배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
- ▶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 **실연자**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생실연)공연권, (생실연)방송권, 전송권, 판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
- ▶ **음반제작자**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판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
- ▶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그 권리가 제한됨. 또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는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때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도 별도로 받아야 함

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 **실연** :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
- ▶ **음반** : 그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50년
- ▶ **방송** :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

11. 침해 구제

가. 원칙

저작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민사 및 형사 구제 신청이 가능함

나. 민사 구제

- ▶ 민사 구제는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치임
- ▶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됨

다. 형사 구제

- ▶ 형사 구제는 저작권자가 고의에 의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수사당국에 소추(訴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임
- ▶ 저작권 침해되는 침해자를 안 이후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는 친고죄임.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당하지 않은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는 수사당국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음. 다만,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
- ▶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아울러 처벌할 수 있음.

II. 제·개정 연혁



1. 저작권법 연혁

▶ 1957년 제정, 1986년·2006년 전부개정 등 총 17회 개정

구 분	주 요 내 용	공 포 일
제 정	- 신규제정	1957. 1. 28.
제 1 차 (전부개정)	- 세계저작권협약 등 국제조약 가입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	1986. 12. 31.
제 2 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1989. 12. 30.
제 3 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1990. 12. 27.
제 4 차	- 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1991. 3. 8.
제 5 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1993. 3. 6.
제 6 차	- 저작권접권 보호기간 연장, 벌칙 상향 조정 등	1994. 1. 7.
제 7 차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1994. 3. 24.
제 8 차	- WTO TRIPs 내용 반영 및 베른협약 가입 등을 위해 저작권보호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	1995. 12. 6.
제 9 차	-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취소 등의 경우 청문제도 도입	1997. 12. 13.
제 10 차	- 전송권 도입, 도서관 면책 범위 확대, 벌칙 상향 조정 등	2000. 1. 12.
제 11 차	- DB제작자 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 명확화 등	2003. 7. 10.
제 12 차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 부여	2004. 10. 16.
제 13 차	-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2006. 10. 4.
제 14 차 (전부개정)	-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도입 - 저작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원회 역할 강화 -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중단 명령 도입 등	2006. 12. 28.
제 15 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2008. 2. 29.
제 16 차	-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을 위한 온라인 자료 수집시 면책 -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 범위 명확화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 부여 등	2009. 3. 25.
제 17 차	-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통합 -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 및 위원회 역할 강화 -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 등	2009. 4. 22.

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연혁

▶ 1986년 제정, 2000년 전부개정 등 총 11회 개정

구 분	주 요 내 용	공 포 일
제 정	- 신규제정	1986. 12. 31.
제 1 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정비	1989. 12. 30.
제 2 차	- 문화공보부의 분리, 개편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1993. 3. 6.
제 3 차	- 법인등 업무상 창작요건, 대여권 및 업무상 사용자 처벌조항 신설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신설, 벌칙 상향조정	1994. 1. 5.
제 4 차	-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산점, 통신망에의 전송·배포자 처벌 - 위탁관리제도의 도입 및 소급보호제도 채택	1995. 12. 6.
제 5 차	- 전송권 및 저작권 관리정보, 교과용도서 게재시 보상금지급조항 신설 - 법원에 의한 손해액 인정, 벌칙 상향조정 등	1998. 12. 30.
제 6 차 (전부개정)	-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행위 금지 및 프로그램 역분석 허용 - 불법복제 단속제도 신설	2000. 1. 28.
제 7 차	- 프로그램 역분석 허용규정 구체화 - 조정조서의 재판상 화해효력 인정 등	2001. 1. 16.
제 8 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 감면 신설 - 알선제도 도입 등	2002. 12. 30.
제 9 차	-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문 문구의 일부 변경	2005. 12. 29.
제 10 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제도 신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기능강화 등	2006. 10. 4.
제 11 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정비	2008. 2. 29.
-	- 저작권법과 통합됨에 따라 폐지	2009. 4. 22.

Ⅲ. 개정 배경 및 이유



▶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체계는 저작권 일반을 보호하는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대외 통상 협상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정부조직법」 개정(2008. 2. 29.)으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여 저작권 보호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저작권 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

▶ 정보통신망 등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음반·영상물 등의 시장 유통구조가 왜곡되고, 창작의욕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음

- 이에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복제·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특히, 온라인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전송자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고, 반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유통하는 온라인 이용자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IV. 추진경과



- ▶ 2008. 3월 TF 구성(문화부, 저작권위, 컴보위)
- ▶ 2008. 6. 20. 입안
- ▶ 2008. 6. 20 ~ 6. 30. 부처협의
- ▶ 2008. 7. 16 ~ 8. 5. 입법예고
- ▶ 2008. 7. 17. 공청회(온라인 불법복제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 2008. 8. 7. OSP 간담회
- ▶ 2008. 9. 3 ~ 9. 29. 부패영향평가(국민권익위원회)
- ▶ 2008. 8. 26 ~ 11. 20. 규제심사(규제개혁위원회)
- ▶ 2008. 11. 20 ~ 11. 23. 법제처 심사
 -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폐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FTA 이행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2008. 10. 10. 국회 제출)과의 충돌 문제로 인하여 의원 입법 형태로 전환
- ▶ 2008. 11. 27. 강승규 의원 등 11인 발의
- ▶ 2008. 11. 2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2009. 3. 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및 의결
- ▶ 2009. 3. 3.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의결
- ▶ 2009. 3. 3. 본회의 상정
- ▶ 2009. 4. 1. 본회의 의결
- ▶ 2009. 4. 10. 정부 이송
- ▶ 2009. 4. 22. 공포
- ▶ 2009. 7. 23. 시행

IV. 주요 개정내용



1. 저작권법 목적의 확대(법 제1조)

중 전 저작권법	중 전 컴법	개 정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저작권 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조의 목적을 참조하여 법의 목적을 확대하여 규정함
- ▶ 저작권 산업 내지 문화 산업이 국가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국제 통상 분야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저작권법이 문화의 기본법이자 문화산업의 기본 규범임을 밝히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감안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저작권법 목적의 하나로 추가

Q&A

- Q**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편제와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하지만, 프로그램에 특화된 규정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폐지에 따른 법적 공백은 없을까요?
- A**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프로그램 고유의 성질에 기인한 규정들은 특례의 장(제5장)으로 두고 있으며, 이외의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정은 기존 저작권법에 흡수 또는 특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폐지에 따른 법적 공백은 없습니다.

2.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법 제2조의2)

종 전 저작권법	개정법
<p>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등)</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조의2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종 전 시행령	개정 시행령
<p>제74조(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수립)</p> <p>① 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권리관리 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조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p> <p>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문제는 저작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사회적 주요 이슈가 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종전 저작권법 제134조에서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교육·홍보 등과 함께 시책 규정에 포함함

▶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저작권 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통하여 일류 선진 문화국가 건설의 기반을 다지고자 함

3. 저작권자들의 추정(법 제8조)

종 전 저작권법	종 전 컴법	개정법
<p>제8조 (저작자들의 추정)</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第4條 (프로그램著作자의 推定)</p> <p>① 原프로그램이나 그 複製物에 또는 프로그램을 公表함에 있어서 프로그램著作자의 姓名(이하 "實名"이라 한다) 또는 널리 알려진 雅號·略稱등(이하 "異名"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프로그램著作자로 推定한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著作자의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公表者 또는 發行者가 프로그램著作權을 가진 것으로 推定한다.</p>	<p>제8조 (저작자들의 추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 프로그램의 경우 발행이외에 공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 발행자·공연자 외에 공표자로 표시된 자도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함

▶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공연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배포자와 공연자 이외에 공표자를 두어야 함

- ▶ 프로그램의 공표자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 추정 규정을 두어 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함

4.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공표 요건 배제(법 제9조)

종 전 저작권법	종 전 컴법	개정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단서 신설>	第5條 (業務上 創作한 프로그램의 著作者) 國家·法人·團體 그 밖의 使用者 (이하 이 條에서 "法人등"이라 한다)의 企劃下에 法人등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業務上 創作한 프로그램은 契約이나 勤務規則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法人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著作者로 한다.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 업무상 창작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법인 등이 '공표'하지 않더라도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도록 함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개발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소스코드를 빼내어 따로 개발한 후 이를 공표함으로써 오히려 법인 등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음,
 - 또한 프로그램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법인 등에서 전략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될 경우, 법인 등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개발한 모든 프로그램을 공개하게 되므로 영업비밀로서 가지는 기회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등 문제점 발생
- ※ 프로그램을 업무상 창작한 경우 개인 창작물의 권리발생과 형평유지를 위해 '공표' 요건을 1994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삭제한 바 있음
-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되는 것으로 하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함
- ▶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법인등과 종업원 사이의 분쟁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정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내용을 수용한 부분임

Q&A

- Q** 저회 회사 직원 1명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저회 회사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등록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인가요, 프로그램을 개발한 1명의 직원에게 있는 건가요?
- A**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와 직원간의 별도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프로그램저작자가 됩니다.
- Q** 아르바이트로 출·퇴근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A** 일반 거래관행상 아르바이트로 출·퇴근하면서 상당한 급료를 받고 개발에 참여 하였을 경우 저작권 귀속에 관한 명문계약이 없어도 회사의 기획하에 회사업무를 개발한 경우라면 저작권은 해당 회사에 있습니다. 즉 근무규칙 기타 취업계약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종업원'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통설입니다.

5.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제한 요건 추가(법 제13조)

종 전 저작권법	종 전 컴법	개정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생략) ②(생략) 1. ~ 2. (생략) <신 설> <신 설> ③ (생략)	第10條 (동일성 維持權) 프로그램著作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題號·내용 및 形式의 동일성을 유지할 權利를 가진다.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使用目的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현행 제3호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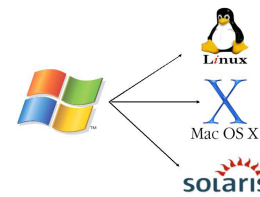
- ▶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지권 제한 사유 이외에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제한 사유를 추가함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특수목적의 컴퓨터에 사용되거나 새로운 하드웨어의 등장 및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에 맞게 수정·보완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특정한 경우에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 현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동일성유지권 제한 사유를 저작권법에 반영함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의 경우

Q&A

- Q**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제한 사유 중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 A** 운영 중인 컴퓨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나 교체 등 또는 전산환경 통합으로 운영 체제를 윈도우즈에서 Linux나 MAC OS, Unix 운영체제로 변경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해당 프로그램저작물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Q**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제한 사유 중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의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 A**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이러한 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작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2bit 체계였던 하드웨어를 62bit 체계로 바꾸면 62bit 체계에 맞게 프로그램의 변수부분을 64bit로 변경해야하며 이러한 경우 바뀌는 부분은 미비하지만 불가피하게 해당 프로그램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TIP

▶ 동일성 유지권 제한 사례



-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 사례
- 전산환경 통합이나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의 이유로 운영 중인 컴퓨터시스템의 운영체제를 윈도우즈에서 Linux나 MAC OS, Unix 운영체제로 변경하는 경우

예 편집 프로그램(Windows에서 Linux로 변환)

```
class CMainFrame : public CMDIFrameWnd
{
public:
    CMainFrame();
    virtual ~CMainFrame();
    virtual BOOL PreCreateWindow(CREATESTRUCT& cs);

protected:
    CStatusBar m_wndStatusBar;
    CToolBar m_wndToolBar;

afx_msg int OnCreate(LPCREATESTRUCT lpCreateStru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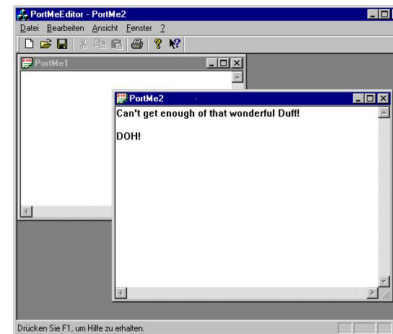
DECLARE_MESSAGE_MAP()

private:
    DECLARE_DYNAMIC(CMainFram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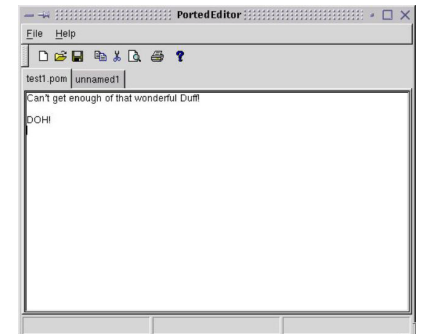
```
class MainFrame : public wxDocMDIParentFrame
{
public:
    wxMenu* editMenu;
    MainFrame(wxDocManager* manager, wxFrame* frame,
    const wxString& title, const wxPoint& pos, const wxSize&
    size, long type);

    void OnAbout(wxCommandEvent& event);
    void RecreateToolBar();

private:
    DECLARE_CLASS(MainFrame);
    DECLARE_EVENT_TABLE();
};
```



Windows용 편집프로그램



LINUX로 포팅된 편집프로그램

[이미지 출처 : <http://www.ibm.com/developerworks/kr/library/l-mic/>]



-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 사례
- 기존의 노후된 시스템을 최신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경우

예 32bit에서 64bit로 업그레이드 한 경우

- ▶ 32-bit와 64-bit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할 때 변수의 값이 다를 수 있음. 자세한 유형별 bit수는 아래 그림과 같음

Type of application	Char	Short	Int	Long	Memory Address
32-bit UNIX and Windows	8	16	32	32	32
64-bit UNIX	8	16	32	64	64
64-bit Windows	8	16	32	32	64

-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어 32bit에서 64bit로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 해당되는 변수의 값들을 64비트에 맞게 바꿔줘야 함

```
NEXUS:/Develop/develop>cat test.sqc
#include <stdio.h>
#include <sqlca.h>

int main()
{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long y;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printf("test program\n");
    return 0;
}
```

```
NEXUS:/Develop/develop>cat test.sqc
#include <stdio.h>
#include <sqlca.h>

int main()
{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sqlint32 y;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printf("test program\n");
    return 0;
}
```

32bit 소스코드

64bit 소스코드

[이미지 출처 : <http://www.iteg.co.kr/a/b/content.asp?fb=2&page=2&num=28>]

6. 대역권(법 제21조)

종전 저작권법	종전 컴법	개정법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프로그램의 去來에의 제공) ①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자등의 許諾을 받아 原프로그램 또는 그 複製物을 販賣의 방법으로 去來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配布할 수 있다.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대역권)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販賣用 프로그램을 營利를 目的으로 貸與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許諾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대역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판매용 프로그램의 대역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 영상 저작물 및 계약 당사자의 국내법에서 정한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WCT 제7조)하고 있음

※ WCT 제7조(대역권)

- (i) 컴퓨터 프로그램,
 - (ii) 영상저작물 및
 - (iii) 계약 당사자의 국내법에서 정한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 (2)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i)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가 대여의 본질적 대상이 아닌 경우에 그 프로그램
 - (ii) 영상저작물의 상업적 대여가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저작물의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영상저작물
-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4년 4월 15일 당시에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대여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공정한 보상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계약 당사자는,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상업적 대여가 저작자의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 ▶ 또한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 저작물에 관하여, 회원국은 저작자나 권리승계인에게 그들이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상업적 대여를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규정(TRIPS 제11조)하고 있음

※ TRIPS 제11조 (대여권)

적어도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회원국은 저작자나 권리승계인에게 그들이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상업적 대여를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회원국은 영상저작물에 관하여서는 그러한 대여가 자기나라 저작자와 권리승계인에게 부여된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저작물의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된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무는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본질적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이러한 국제 조약의 내용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판매용 프로그램의 대여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7. 학교교육 목적 이용의 저작권 제한 사유(법 제25조)

종 전 저작권법	개정법
<p>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p> <p>①(생략)</p> <p>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p> <p>③(생략)</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⑤ ~ ⑩ (생략)</p> <p>〈신설〉</p>	<p>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p> <p>①(현행과 같음)</p> <p>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p> <p>③(현행과 같음)</p> <p>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⑤ ~ ⑩(현행과 같음)</p> <p>제37조의2 (적용 제외)</p> <p>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제25조·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 ▶ 유아교육법 제정(04. 1)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서도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권 제한 사유가 적용되도록 함
- ▶ 종전 규정의 내용상 '복제'는 배포를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적 명확성 확보차원에서 '배포'를 명시함

Q&A

Q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의 범위는?

A 각급 학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수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교육지원기관 구성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나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지원센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한국교육개발원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TIP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치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는 유치원을 말하며, 유치원에는 국립유치원(국가가 설립·경영), 공립유치원(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과 도립으로 구분), 사립유치원(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이 있음

〈유치원법 제2조 및 제7조 참조〉

8.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한 도서관 면책(제31조)

종 전 저작권법	개정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 ⑦(생략) <신 설>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 ⑦(현행과 같음) ⑧「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종 전 도서관법	개정 도서관법
<신 설>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은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나, 오프라인 자료에 비하여 생성·소멸주기가 짧은 이들 온라인 자료에 대한 관리는 미약한 상황임

- ▶ 이에 국가 기록물의 전반적 법정 수집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저작물 중 국가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도서 등을 수집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복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에 대한 수집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개정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반영되어 있음

- ▶ 제31조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에 따른 개정 내용이 아니며, 별도로 발의된 개정안(정병국 의원, 2008. 11. 6.)의 내용으로 동 개정안의 시행일은 2009. 09. 26.임

TIP

개정 경과

- 2008. 01. 09. : 국회 상정
- 2009. 03. 02. : 국회 의결
- 2009. 03. 25. : 공포
- 2009. 09. 26. : 시행

9.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기록방식(법 제33조)

종 전 저작권법	개정법
<p>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p> <p>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p> <p>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u>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u></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p> <p>①(현행과 같음)</p> <p>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u></p> <p>③(현행과 같음)</p>
종 전 시행령	개정 시행령
<p>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p> <p>①(생략)</p> <p>《신설》</p>	<p>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p> <p>①(생략)</p> <p>②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p> <p>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p> <p>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p> <p>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 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p> <p>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p>

- ▶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일정시설에 한하여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
- ▶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에는 다음의 4가지 사항을 규정함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 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 ▶ 제33조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에 따른 개정 내용이 아니며, 별도로 발의된 개정안(김소남 의원, 2008. 7. 24.)의 내용으로 동 개정안의 시행일은 2009. 09. 26.임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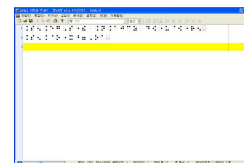
개정 배경 및 경과

- ▶ 동 규정은 2008. 7. 24.에 김소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으로, 2009. 01. 09.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과정에서 개정법과 같이 수정·의결되었음
- 김소남 의원 발의안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배포가 가능한 범위를 기존 '점자'와 함께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을 추가하여 제33조제1항을 개정하였으나,
 - 음성변환 출력기용 정보 기록방식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 수단이 다양하고 또 다른 방식을 개발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보다 유연한 규정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정법과 같이 제33조제2항을 수정하였음
- ▶ 개정 경과
 - 2009. 01. 09. : 국회 상정
 - 2009. 03. 02. : 국회 의결
 - 2009. 03. 25. : 공포
 - 2009. 09. 26. : 시행

Q&A

Q 개정 저작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bbf, brl, brf, dxb 파일 형식을 가지고 있는 전자적 형태의 점자 정보기록방식, 보이스아이(Voiceye)로 대표되는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데이지(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로 표현되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기타 시각장애인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기술적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이 있습니다.



점자문서 편집기

【자료 제공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보이스아이 플레이어

【출처 : www.voiceye.com】



데이지 플레이어

【출처 : www.tomtec.co.kr】

10.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의 적용 제외(법 제37조의2)

종 전 저작권법	개 정 법
〈신 설〉	제37조의2 (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제25조·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중 일반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중복되어 적용되는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특례(법 제101조의3)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 사유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적용 예외를 규정함
- ▶ 종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제23조, 제25조, 제30조 및 제32조만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저작권법에 반영한 것이며,
 - 이들 네 개 조문 이외의 제한 규정은 프로그램에는 적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명문화된 규정이 없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음

11. 프로그램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45조)

종 전 저작권법	개 정 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신설〉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현행과 같음)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프로그램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종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개작권·번역권에 해당되며, 개정법에서는 개작권·번역권을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포섭하여 규정하였으며, 권리 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 종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개작이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함
- ▶ 일반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으나, 프로그램의 경우 양수인은 양도 받은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양수인의 사용 환경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 프로그램의 양도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내용임
 - 개작권 없는 프로그램의 양도는 무의미하므로, 프로그램의 전부를 양도할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함

12. 질권의 행사 등(법 제47조)

종 전 저작권법	종 전 컴법	개정법
<p>제47조 (저작권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p> <p>저작권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21조(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저작권의 행사 등)</p> <p>①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 저작권은 질권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이를 행사한다.</p> <p>②프로그램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프로그램의 양도 또는 대여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락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전의 지급 또는 물건의 인도전에 지급 될 금전이나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p>	<p>제47조 (저작권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p> <p>①저작권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출판권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p> <p>②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p>

▶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의 경우 그 행사주체가 명백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저작재산권자가 행사하는 것으로 명시함

※ **질권** : 질권(質權)이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유치하고,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의 가액(교환가치)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함

13. 등록규정의 정비

(법 제53조,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

종 전 저작권법	종 전 컴법	개정법
<p>제53조 (저작권의 등록)</p> <p>① ~ ② (생략)</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이 등록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후 1년이 경과하여 등록을 한 경우엔 그 창작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한다.</p> <p>〈단서 신설〉</p>	<p>제24조(프로그램의 등록)</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때에는 그 등록된 프로그램저작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그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그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 경우에는 그 창작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p>	<p>제53조 (저작권의 등록)</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후 1년이 경과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창작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p>
<p>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p> <p>(생략)</p>		<p>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p> <p>(현행과 같음)</p>
<p>제55조 (등록의 절차 등)</p> <p>①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u>저작권등록부</u>에 기재하여 행한다.</p>		<p>제55조 (등록의 절차 등)</p> <p>①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u>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u>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 행한다.</p>
<p>〈신 설〉</p>	<p>제25조 (비밀유지의무)</p> <p>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관리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및 그 職에 있었던 者는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55조의2 (비밀유지의무)</p> <p>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 창작 후 1년이 경과하여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 창작연월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등록부상의 창작연월일에 대한 추정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기존 저작권등록부와 프로그램등록부를 별도로 두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폐지에 따른 초기의 등록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은 최소화함

- ▶ 등록업무 담당자에게 등록 업무 수행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미공개된 저작물 정보에 대한 저작권자의 보안유지에 관한 불신을 해소하여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Q&A

Q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은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등록부를 따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일반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 등록이 그 동안 각각 적용되어 오면서, 등록의 내용과 형식면에서도 다르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또한 일반인의 등록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시스템 체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등록 체계를 이원화하여 법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 등록체계에 관한 연구 및 검토를 통해 개선할 예정입니다.

Q 저작물을 창작한지 1년이 지나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없거나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나요?

A 창작 후 1년이 경과한 저작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창작년월일의 추정에 있어, 1년이 지난 저작물의 경우 창작사실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창작연월일의 추정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나 침해 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력 등의 효력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14. 공연보상청구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종 전 저작권법	개 정 법
(신 설)	<p>제76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p> <p>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p>
(신 설)	<p>제83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p> <p>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p>

- ▶ 음반을 사용하는 방송과 디지털음성송신에서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경우에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이 공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모두 공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물론 보상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음반의 공연으로 인하여 생실연의 기회가 상실되고 음반 판매가 감소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 세계 각국은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호수준에 맞춰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함
- ▶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에 따른 개정 내용이 아니며, 별도로 발의된 개정안(김창수 의원, 2008. 11. 14.)의 내용으로 동 개정안의 시행일은 2009. 09. 26.임

TIP

개정 경과

- 2009. 01. 09. : 국회 상정
- 2009. 03. 02. : 국회 의결
- 2009. 03. 25. : 공포
- 2009. 09. 26. : 시행

15.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법 제한 (법 제87조)

종 전 저작권법	개 정 법
<p>제87조 (저작권법의 제한) 제23조·제24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32조·제33조제2항·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저작권법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p> <p><u>〈신 설〉</u></p>	<p>제87조 (저작권법의 제한) ①(현행과 같음)</p> <p>②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p>

- ▶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음반을 일시적으로 녹음·녹화할 수 있으나, 방송사업자와 그 형태가 같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게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위한 준비행위인 실연이 녹음된 음반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 규정이 없었음
- ▶ 이에,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를 면책시키는 것과 같이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단, 녹음물은 녹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도록 함

16. 프로그램의 보호 대상(법 제101조의2)

종전 저작권법	종전 컴법	개정법
(신설)	第3條 (적용범위) ①이 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言語 : 프로그램을 表現하는 手段으로서의 文字·記號 및 그 體系 2. 規約 :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言語의 用法에 관한 특별한 約束 3. 解法 :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指示·命令의 組合方法	제101조의2 (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규약·해법을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함
- ▶ 프로그램 언어·규약·해법은 프로그램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한 표현의 수단 내지 매개체로서 저작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게 되면 후속 개발에 지장을 주게 되어 공익에 반함

Q&A

Q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을 등록할 수 있나요?

A 컴퓨터 용어로서의 알고리즘이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된 순서가 있는 동작, 즉 명령어들의 유한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번 개정 저작권법(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해법이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논리적 처리 수순 그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17. 프로그램의 저작권 제한(법 제101조의3)

종전 저작권법	종전 컴법	개정법
(신설)	第12條 (프로그램著作權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目的上 필요한 범위안에서 公表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 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권 제한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學校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教育機關(上級學校 入學을 위한 學力이 인정되거나 學位를 수여하는 教育機關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 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學校 및 이에 準하는 學校의 교육목적에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家庭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學校 및 이에 準하는 學校의 入學시험 그 밖의 學識 및 技能에 관한 試驗 또는 檢定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에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에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2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를 별도로 둠
-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폐지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그대로 반영함

TIP

일반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비교

구분	일반 저작물	프로그램 저작물
재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 복제 부당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 침해 금지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표 재판 또는 수사 목적 복제 부당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 침해 금지 제101조의3 제1항제1호
교과용 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표 초·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에 게재 보상금 지급 제25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표 초·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에 게재 보상금 지급 부당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 침해 금지 제101조의3 제1항제3호
교육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수업 또는 지원 목적 복제·공연·방송·전송 교육 담당자 및 교육 받는 자 대학교에서만 보상금 지급 제25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학력·학위 인정 교육기관에 한함) 수업 과정 제공 목적 복제·배포 교육 담당자(교육 받는 자 제외) 대학교 보상금 지급 안함 부당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 침해 금지 제101조의3 제1항제2호
사적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표 비영리 한정된 범위 or 개인적 이용 복제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표 비영리 한정된 장소 and 개인적인 목적 복제 부당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 침해 금지 제101조의3 제1항제4호

18. 프로그램코드 역분석(법 제2조 및 제101조의4)

종전 저작권법	종전 컴법	개정법
(신설) 제2조(정의) 10.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10.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제12조의2 (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제101조의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 ▶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은 프로그램의 해법(알고리즘) 기타 특정요소를 확인하고 분석·연구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 경쟁사 제품의 기술정보를 알아내거나 손쉽게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추출해 낼 수 있어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함
- 그러나 프로그램의 원리를 연구하거나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찾을 수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프로그램코드의 역분석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역분석(역공학,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은 '기존의 프로그램 목적코드를 분석하여 소스코드(Source Code)로 변환하는 방법 등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와 원칙들을 추출하고 이를 기초로 전혀 다른 표현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말함

- ▶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은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와 정당한 권원이 있는 프로그램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2001년 법 개정시 EU지침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임
- 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저작물이 아닐 수도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정의 규정을 일부 수정하고, 역분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역분석 정보의 사용 제한을 현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내용을 수용함

Q&A

Q 역분석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취미로 역분석을 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A 개정 저작권법 제2조 제34호에서는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에 대해 “독립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 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의4 제1항에서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역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미라고 하더라도 역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하며, 그 목적이 호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정당한 권원이 없거나 역분석의 목적이 호환 목적이 아닌 경우는 불법입니다.

Q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였는데 해당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자 역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추가적으로 제가 별개로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작물로 볼 수 있는가요?

A 프로그램 역분석의 경우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이 호환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프로그램 역분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처럼 프로그램을 추가하기 위하여 역분석을 이용하신 경우는 역분석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추가로 기능을 개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허락없이 개작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Q 프로그램 역분석을 통해서 표현이 아닌 해당 프로그램의 기능 및 구현방법(로직) 등 아이디어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도 불법인가요?

A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기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프로그램 역분석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역분석의 범위는 호환 목적 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기능 및 구현방법(로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해지는 프로그램 역분석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19. 정당한 이용자의 보존을 위한 복제(법 제101조의5)

종전 저작권법	종전 컴법	개정법
<p><u>신설</u></p>	<p>제14조 (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 등)</p> <p>①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p> <p>②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하는 자는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1조의5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p> <p>①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p> <p>②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기록매체(플로피디스크, 하드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 저작물보다 쉽게 멸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업이나 복사 등의 방법으로 프로그램 사용자의 합리적인 사용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 정당한 권한을 갖는 프로그램 이용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으며 그 용도는 오직 보존용으로만 가능 함
- 이는 일본 저작권법(제47조의2), 미국 저작권법(제117조) 및 EU저작권지침(제5조제2항)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임
- ▶ 프로그램저작물은 기능성 저작물로서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취급에 있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으로 인해 저작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를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하여 합법적으로 이를 취득한 자의 복제권을 인정함으로써 개발된 프로그램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정시부터 규정되어 있었음

- Q** 보존 목적으로 하는 복제는 얼마나 가능한가요?
- A** 보존용 복제가 몇개까지 가능한 지는 규정된 것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1~2개 정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수의 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Q** 원본 CD를 친구에게 팔아버린 경우 보존용 복제 CD는 내가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나요?
- A** 저작권법 제101조의5 제2항에서는 “원래의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CD를 친구에게 팔았다면 그 복제물의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보존용 복제 CD도 폐기하여야 합니다.
- Q** 정당한 사용자는 어떤 사용자를 말하나요?
- A** 정당한 사용자는 정품SW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물론 저작권자에게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을 얻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법 제101조의6)

종전 저작권법	종전 컴법	개정법
<p>(신설)</p>	<p>제16조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 ①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 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등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 이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안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③프로그램저작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를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설정할 수 있다. ④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양도할 수 없다. ⑤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3년간 존속한다.</p>	<p>제101조의6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③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를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⑤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⑥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p>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을 수용
- 배타적 권리를 설정 받은 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발행·판매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가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SW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됨
- 이러한 목적으로 2000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시에 도입된 규정임

※ '복제+배포'에 한정되어 있던 배타적 권리를 2002년 개정법에서 온라인상의 SW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복제+배포'+ '복제+전송'으로 확대함

▶ 저작권자로부터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의 권리를 등록하여 공시함으로써 이중적인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방지하는 등 발행권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에게 양도·질권 설정 등을 통한 투자 자금 회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SW유통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음

Q&A

- Q**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복제권, 전송권 등과 같은 일반적인 저작자의 권리와 다른 권리인가요?
- A** 동일한 권리입니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일반적인 저작자의 권리 중에서 「복제권+배포권」, 「복제권+전송권」을 하나의 권리로 묶어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상의 출판권이나 특허법상의 전용실시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1. 프로그램의 임치(법 제101조의7)

종전 저작권법	종전 컴법	개정법
<p>〈신설〉</p>	<p>제20조의2 (프로그램의 임치) ①프로그램저작권자와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의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01조의7 (프로그램의 임치) ①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p>

- ▶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안정적인 프로그램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임치(Escrow)하여 필요시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함
- 이러한 임치제도는 2002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시 도입되었음
 -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수치인과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도록 함

Q&A

Q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SW임치물을 어떤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A 한국저작권위원회는 SW임치전용금고를 설치하여 별도의 공간에 SW임치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24시간 감시카메라를 작동하여 임치물 보관소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임치물 보관소는 내화 특수 철판으로 설계되어 화재 및 외부 침입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사설경비업체를 통해 담당자 부재 시에도 임치물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Q 외국에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외국회사에서 임치를 요구합니다. 외국 임치 기관을 통한 SW임치계약도 가능한가요?

A 외국 임치기관을 이용한 SW임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 임치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임치물 교부조건 발생 시 또는 기타 분쟁 발생시에 저작권 보호와 임치물 확보에 보다 용이합니다.

Q 3자간 SW임치제도와 양자간 SW임치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3자간 SW임치계약은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수치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치를 하는 계약형태이고, 양자간 SW임치계약은 이용자가 다수일 경우 저작권자가 단독으로 수치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과 SW임치계약을 하고 추후 이용자가 등록 절차를 거쳐서 SW임치계약에 편입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Q 외국에서는 SW임치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A 여러 선진국의 경우는 30여년전부터 SW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다수의 이용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외국 SW임치기관도 소스코드 및 개발기술정보 등의 임치, 임치물의 무결성 검증, 임치물 교부조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개발중인 SW도 SW임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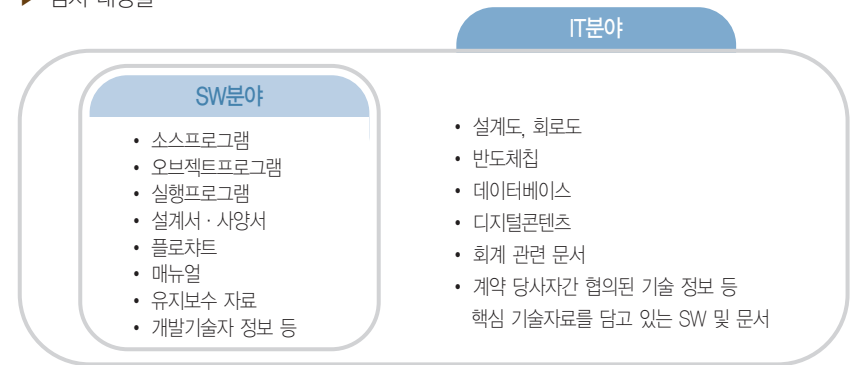
A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SW도 임치계약이 가능합니다. 우선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SW임치계약을 체결한 후, 중간 산출물을 위원회에 임치하고, 추후 최신본의 임치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발 단계별로 업데이트 된 임치물을 임치하면 됩니다.

TIP

▶ 임치제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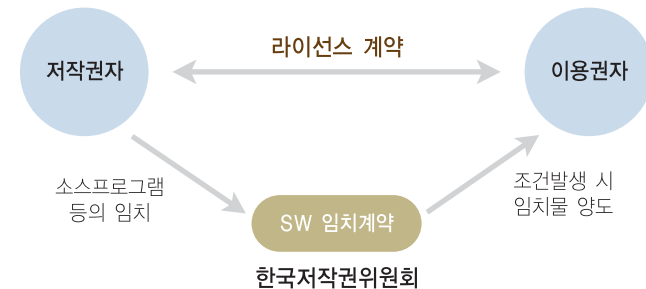
- ▶ 소프트웨어 거래 시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이하 사용자)를 위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해 두고
 -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소스코드의 멸실 등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치기관이 해당 원시코드(이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를 이용자에게 교부함으로써
 - 저작권자의 폐업·파산·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안정적·계속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임치 대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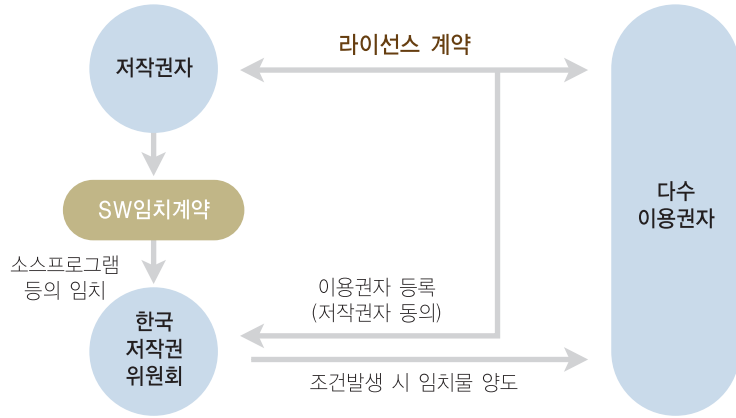


▶ 임치 계약의 유형

- 3자간 SW임치계약(단일 이용자)



※ 저작권자와 이용권자가 소스프로그램 등을 위원회에 임치 후 일정 조건 발생 시 이용권자에게 임치물을 양도



※ 저작권자가 이용권자를 위하여 소스프로그램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치한 후 일정 조건 발생 시 등록된 이용권자에게 임치물을 양도

▶ 임치계약 절차도

- 1 임치계약신청서 및 임치물 접수**
 - 임치계약에 대한 신청서 및 임치물 (CD-ROM, DVD) 접수
 - 임치계약 관련 구비서류 확인(인감증명서, 사업등록증 등)
 - 계약 체결전 계약서 검토, 라이선스 관련 법률적 자문
- 2 임치물 동일성 검사 등 확인**
 - 임치물의 저장 여부 및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 확인
 - 기술적 확인(컴파일 등)을 실시하여 임치물의 동일성 확인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 3 임치계약서 및 봉인확인서 작성**
 - 계약관련 주의사항 고지 및 계약서 수정여부 등을 최종 확인 후 계약체결
 - 임치물의 봉인확인서(3부) 작성
- 4 임치물 봉인 및 확인서 교부**
 - 임치물 봉인 후 봉인확인서 교부 (저작권자 및 이용권자 각 1부)
- 5 수수료 납부**
 - 저작권자 또는 이용권자가 소정의 수수료 납부
- 6 임치증서 교부 (체결절차 종료)**
 - 임치증서를 교부함으로써 계약 체결 절차 종료(저작권자 및 이용권자 각 1부)
 - 계약 체결 후 지속적인 해당 업체 관리 실시 (변경사항 통보 및 관련 법률·기술지원)

2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법 제112조)

종전 저작권법	종전 컴법	개정법
제112조 (저작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저작물등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第35條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①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에 대하여 알선·조정하고, 프로그램저작권 그 밖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며, 프로그램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④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②委員會는 委員長 1人を 포함한 10人 이상 20人 이상의 審議委員(이하 '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프로그램 저작권 그 밖에 프로그램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4.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프로그램저작권 그 밖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제112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종 전 저작권법	종 전 컴법	개 정 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결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결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職位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委員의 任期는 당해 職位에 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委員중 缺員이 생긴 때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補缺委員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補缺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조사연구를 위하여 연구실을 둔다.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결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결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 ▶ 저작권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및 정책 개발 기능을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함
- ▶ 위원회의 기능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위원수도 기존의 15-20명에서 20-25명으로 확대하였음
- ▶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존 저작권위원회의 기능 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알선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온라인 불법복제와 관련 이를 모니터링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삭제 등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
- ▶ 또한, 기존의 감정 기능과 관련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감정에 관한 기능을 수용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에 프로그램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Q&A

- Q**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 A**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한 법정기관으로, 이들 양 기관에서 수행했던 업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위원회의 업무는 분쟁의 조정·알선, 저작권 관련 사항의 심의,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저작권등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저작권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통합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 A**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컨버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컨버전스 환경에서 기존의 다양한 저작물들이 디지털화 되고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하나의 문화콘텐츠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콘텐츠는 음악, 영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저작물들과 합쳐져서 하나의 융합저작물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통합으로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3. 위원회의 업무(법 제113조)

종전 저작권법	종전 컴법	개정법
제113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분쟁의 조정 2. 제10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 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등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제36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분쟁에 대한 알선·조정 2.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프로그램 부정복제를 신고센터의 운영,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5.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지원 6.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 7.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8.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9. 그 밖에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13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분쟁의 알선·조정 2. ~ 8.(현행과 같음)
<신설> 10. 법령이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업무 11.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1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 저작권 관련 분쟁의 보다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의 조인과 타협 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는 알선 제도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시정권고 등이 위원회의 업무에 새롭게 추가됨

Q&A

Q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모를 위하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A 위원회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모를 위해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기증 등을 통해 받은 저작물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Free 사이트(freeuse.copyright.or.kr)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등의 보급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 및 사용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인식 기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공정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4. 분쟁의 알선(법 제113조의2)

종전 저작권법	종전 컴법	개정법
<신설>	제36조의2 (알선) ①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13조의2 (알선) ①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의3 (알선의 중단) ①알선위원은 알선으로써는 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②알선중인 분쟁에 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④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36조의4 (알선의 성립)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알선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저작권등의 분쟁에 관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상의 알선을 도입(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2003. 7. 1.부터 시행되어 왔음)
- ▶ 알선제도는 3인의 조정위원에 의해 운영되는 분쟁조정제도와는 달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의 조인과 타협 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 분쟁해결제도로서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무료임

※ 프로그램저작물 알선 현황

구 분	'03	'04	'05	'06	'07	'08	계
건 수	5	11	13	13	17	8	67

TIP

알선제도의 특성

- ▶ 신속성
 - 조정제도 보다 간이한 절차진행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짐
- ▶ 경제성
 - 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무료임
- ▶ 비공개성
 - 비공개가 원칙으로 알선당사자의 비밀이 보장됨
- ▶ 조정신청 기회의 보장
 - 알선진행도중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신중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음

조정·알선·중재 제도 비교표

구 분	개 념	효 력	시행기관
조 정	중립적인 제3자적 지위를 가진 조정기구를 통해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제도	재판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저작권위원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알 선	알선위원이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주선함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	민법상 화해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저작권위원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중 재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	확정판결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저작권위원회 • 대한상사중재원 • 언론중재위원회 등

Q&A

Q

현재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알선 신청이 가능할까요?

A

법원에 소송중인 경우라도 알선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알선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을 갖게 되나요?

A

알선이 성립되면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며,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창설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민법상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료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Q

상대방이 알선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A

일방의 알선신청에 대하여 타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경우, 해당 알선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알선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Q

알선신청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알선신청의 취하는 알선이 성립되기 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5. 조정의 신청(법 제114조의2)

종 전 저작권법	종 전 컴법	개정법
<p>〈신 설〉</p> <p>제118조 (조정비용) ①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p> <p>〈신 설〉</p> <p>②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p>	<p>제38조 (조정 신청 등) ①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행한다. ③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월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제114조의2 (조정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p> <p>제118조 (조정비용 등) ①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조정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p>

- ▶ 조정을 받으려는 자의 조정신청서 제출,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 등 종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법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으로 규정함

▶ 조정제도의 개요

- ▶ 조정제도란 저작권 및 관련 분쟁 발생시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조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말함

▶ 특 성

- (1) 신속성
소송에 비해 신청 및 진행 절차가 신속·간편하므로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에 비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처리됨
- (2) 전문성
각 조정부는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3) 경제성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분쟁조정은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음
- (4) 비공개성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업상 또는 개인적 비밀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음

Q&A

- Q** 현재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A 물론입니다. 법원에 소송중인 경우라도 조정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Q** 분쟁조정이 성립된 후 상대방이 합의조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한 내용의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 Q**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A 일방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타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경우, 해당 조정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소송처럼 조정제도의 참가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6. 감정(법 제119조)

종 전 저작권법	종 전 컴법	개 정 법
제119조 (감정) ①위원회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등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때에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8조의2 (감정) ①위원회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양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외에 법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때에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9조 (감정)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 ▶ 프로그램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분쟁조정인 경우에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사도(복제도) 감정 등이 필수적 사항이므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2002년, 「저작권법」은 2006년 개정시 도입

※ 프로그램저작물 감정 현황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계
건 수	28	28	22	26	30	48	46	228

※ SW감정의 종류

- SW간 동일·유사성 정도를 판단하는 유사도(복제도) 감정
- SW의 개발목표 대비 개발진행 정도 및 하자유무 등을 판단하는 완성도(하자) 감정
- SW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및 단가 등을 판단하는 개발비용 산정 감정
- 기타 SW와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대한 기타 감정

TIP

▶ 감정제도의 개요

- ▶ 감정제이란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담당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의뢰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대상 저작물에 대한 동일·유사성, 완성도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증거조사방법으로 저작권법 및 소송법상 인정되는 제도임
-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분석 및 판단을 전제로 하는 사건들의 경우 감정결과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 판단근거로 기능하고 있음
- ▶ 감정대상 및 신청인
 - 감정대상 :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
 - 신청인 : 법원 또는 수사기관, 프로그램의 경우 분쟁조정 양 당사자

Q&A

Q 개인이 감정을 의뢰할 수는 없나요?

A 감정의뢰의 주체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또는 분쟁조정 양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 직접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에 조정인 진행 중인 프로그램 관련 사건인 경우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감정결과는 어떠한 효과를 가지나요?

A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최종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위원회의 감정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위원회의 감정이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감정결과가 도출되는 만큼 사건해결의 실질적인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감정을 위해서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A

일반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 사본, 저작물의 유사성 비교자료, 위원회가 감정 필요상 요청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감정 대상 프로그램의 소스프로그램 및 실행프로그램, 프로그램 명세서, 운영 및 설치 매뉴얼, 완료 및 검토보고서, 데이터베이스 명세서 등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27. 저작권정보센터(법 제120조)

종 전 저작권법	개 정 법
<p>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신 설)</p>	<p>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①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②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종 전 시행령	개 정 시행령
<p>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기술위원회를 둔다. ②정보센터는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를 수집하고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편리한 검색·활용을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정보센터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적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p>

- ▶ 종전 저작권법 제121조에 규정하고 있던 위임 관련 규정을 해당 조문으로 이동함
- ▶ 대통령령에서 저작권정보센터에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 기술적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 기술적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28. 침해로 보는 행위(법 제124조)

종 전 저작권법	종 전 컴법	개정법
<p>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p> <p>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 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p>〈신 설〉</p> <p>제136조(권리의 침해죄)</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 6. 〈생략〉 <p>제140조(고소)</p> <p>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p>第29條 (프로그램著作權 침해행위 등)</p> <p>④다음 각號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著作權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著作權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國內에서 配布할 目的으로 수입하는 행위 <p>2. 프로그램著作權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複製物(제1號의 輸入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業務上 사용하는 행위</p>	<p>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p> <p>① 1. ~ 2.(현행과 같음)</p> <p>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p> <p>제136조(권리의 침해죄)</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 6. 〈생략〉 <p>제140조(고소)</p> <p>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제124조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 ▶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불법복제물임을 알고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권리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이를 추가함
- ▶ 불법 프로그램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용한 경우 종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여타 저작권 침해 간주 행위와 동일하게 친고죄였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음
- ▶ 또한, 형량에 있어서도 종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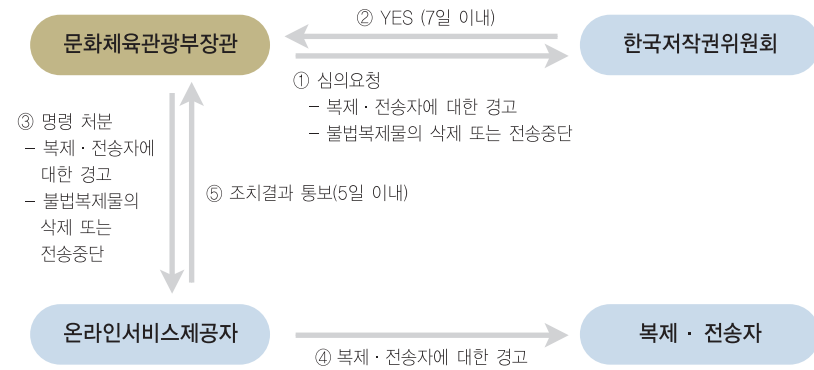
29.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법 제133조의2제1항)

종 전 저작권법	종 전 컴법	개정법
<p>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p> <p>① ~ ③(생략)</p> <p>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⑤, ⑥ (생략)</p> <p>제142조 (과태료)</p> <p>①(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③(이하 생략)</p>	<p>제34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 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p> <p>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이하 "거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전송한 프로그램</p> <p>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p> <p>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및 정보</p>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삭제명령 등)</p> <p>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p> <p>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p> <p>② ~ ⑥ (생략)</p> <p>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제142조 (과태료)</p> <p>①(생략)</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2 (생략)</p> <p>3. 제13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4. (생략)</p> <p>③(이하 생략)</p>

종 전 저작권법 시행령	종 전 컴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p>제72조(삭제 또는 중단 명령의 절차와 방법)</p> <p>①저작권위원회는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삭제 또는 중단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중단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삭제·중단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23조의3(부정복제물의 취급의 거부 등의 명령)</p> <p>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을 하도록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명령의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2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 절차와 방법)</p> <p>위원회는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p> <p>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전송중단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 ▶ 온라인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및 이들의 위치정보 등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권리자의 신고에 의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에 대하여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킬 것과 해당 불법복제물 전송자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함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처도록 하고 명령의 대상자인 해당 OSP에게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함
- ▶ OSP가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절차



Q&A

Q 저작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자의 고소가 없이도 문화체육관광부가 OSP에 대하여 불법복제물등의 삭제·전송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A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상의 명령제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규제조치로서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를 확립할 책무가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1차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여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거나, 저작권자가 행정적 규제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심의과정이나 의견제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작권자의 고소 여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위한 요건입니다.

30.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법 제133조의2제2항)

증전 저작권법	증전 컴법	개정법
<p>(신설)</p>	<p>제34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p> <p>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이하 "거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전송한 프로그램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및 정보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p> <p>①(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송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42조 (과태료)</p> <p>①(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제142조 (과태료)</p> <p>①(생략)</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제13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생략) <p>③(이하 생략)</p>	

〈신 설〉

제72조의3(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2. 해당 복제·전송자가 복제·전송한 양
3. 게시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 대체 가능성
4. 불법복제물등이 저작물등의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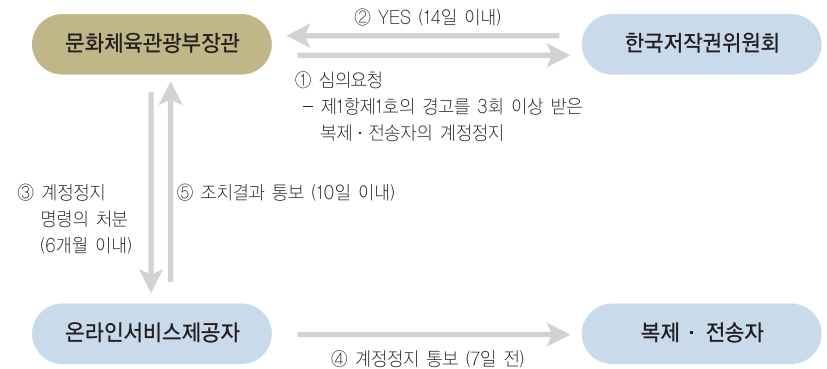
1. 복제·전송자의 계정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3.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실
4. 정지 기간

③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④제2항의 명령서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불법복제물등의 전송으로 인하여 이미 세 차례나 경고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함
- 계정 정지 명령은 인터넷망 접속 계정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OSP의 이용자 계정만을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OSP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 해당 사이트 내에서도 로그인이 전제되는 글쓰기·스케줄 관리등을 제외한 콘텐츠 검색 및 이메일 등은 이용이 가능함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해당 OSP 및 계정소유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이러한 명령을 받은 OSP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계정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메일을 제외한 로그인 기반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복제·전송자가 불법 복제와 상관없는 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OSP는 해당 계정을 정지하기 1주일 전에 미리 계정 정지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음
- ▶ OSP가 계정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복제·전송자에게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절차



Q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인 계정을 6개월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명령은 인터넷 사용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요?

A 개인 계정 정지 명령은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복제·전송하여 이미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리기 위한 심의시 해당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복제·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지 기간 역시 정지명령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최장 6개월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특정 OSP 서비스의 개인 계정만을 최장 6개월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개인 계정 정지명령이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블로그에 관리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5곡 올렸는데 계정을 정지당할 수 있나요?

A 개정법의 계정 정지 명령 제도는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의 유통 질서를 해치는 해비업로더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이용자는 계정 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업로드할 경우 계정 정지명령과 같은 정부의 행정 명령과는 별개로, 관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계정 정지”되는 계정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계정 정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사이트에 3개의 계정이 있는 사람의 경우, 3개의 계정 중 어느 하나의 계정이 명령 대상이 되었을 경우, 다른 계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정지 명령이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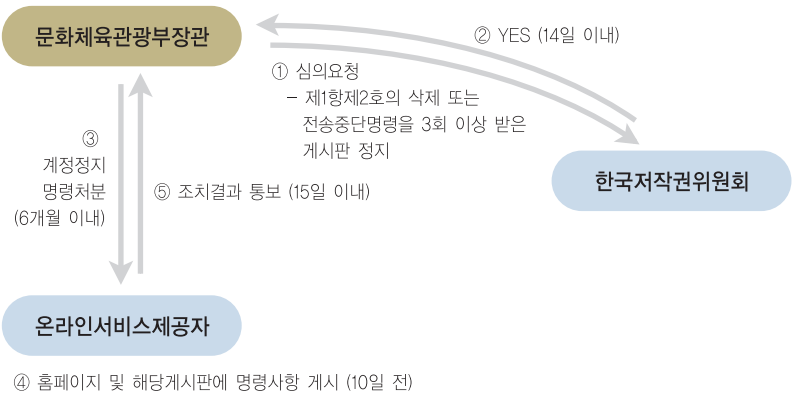
31.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법 제133조의2제4항)

종 전 저작권법	종 전 컴법	개정법
<p>(신 설)</p>	<p>제34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p> <p>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이하 "거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전송한 프로그램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및 정보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삭제명령 등)</p> <p>①~③ (생략)</p> <p>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⑤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제142조 (과태료)</p> <p>①(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제142조 (과태료)</p> <p>①(생략)</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제13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생략) <p>③(이하 생략)</p>	

중전 저작권법 시행령	중전 컴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p>〈신 설〉</p>		<p>제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중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p> <p>①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2. 해당 게시판의 개설 취지 3. 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4.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5. 불법복제물등이 차지하는 비율 6. 게시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 대체 가능성 7. 해당 게시판의 불법복제물등의 차단 노력 정도 8. 불법복제물등의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3. 위법 행위의 내용 4. 정지 기간 <p>③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의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p>④법 제133조의2제5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정지 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게시판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시판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이 유통되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게시판 서비스 중지 명령은 OSP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에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에 대해서만 내려질 수 있으므로, 동호인 모임에서 운영하는 일반적 형태의 게시판의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음
- 단, 불법복제물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형태의 게시판은 서비스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 ▶ 상업적 이익이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에 수록된 게시물에 대해 3회 이상 삭제 또는 중단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게시판의 형태, 불법 복제물의 수량, 불법 복제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게시판이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됨
- 이 경우 다른 시정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OSP와 게시판 운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 게시판 서비스 중지 명령을 받은 OSP는 게시판에 적법한 자료를 올린 선량한 게시판 이용자들이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시판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10일 동안 OSP의 홈페이지와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함
- ▶ OSP가 게시판 서비스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사실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 불법 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중지 절차



Q&A

Q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 대상인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게시판은 하나의 게시판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A 장르별, 저작물별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위 폴더(게시판)를 두는 게시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위 폴더에만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경우에는 해당 하위 폴더만이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하위 폴더 전체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되었다면 해당 게시판 전체가 명령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Q 삭제·중단 명령이 3번 내려지면 무조건 게시판이 정지되나요?

A 삭제·중단 명령을 3번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게시판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게시판이 정지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Q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A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이란 게시판 운영자가 금전적인 수익을 얻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에게 적립된 포인트로 쇼핑·영화·음악감상·현금 교환 등의 제공, 사이버머니·파일 저장공간 등을 제공하여 저작물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Q 개정 저작권법에 위반되면 현재 개인적으로 운영중인 카페나 블로그도 폐쇄되나요?

A 개정법의 게시판 정지 명령 제도는 헤비업로더 등 불법 복제를 게시자에게 상업적 이익(경치적 댓가 등)을 주거나 불법다운로드가 용이하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웹하드 형태 전문 불법 복제 유통 게시판,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 전용 카페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등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가 해당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피 등에 올라온 저작물을 문제삼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Q 프랑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려다 헌법위원회의 위헌판결이 났는데, 개정 저작권법 상의 개인 계정 및 게시판 정지명령 또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A 프랑스에서 도입을 추진하다 위헌결정이 난 이른바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계정(IP)을 정지하여 인터넷(온라인) 접근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임에 비하여 우리 법은 인터넷

으로의 접속은 일체 제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의 자유로운 접속은 보장하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특정 사이트 이용자의 계정이나 게시판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는 여전히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행정명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14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7조 관련)

위 반 행 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경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	300	500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700
계정 정지 명령 및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	700	1,000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700

(단위: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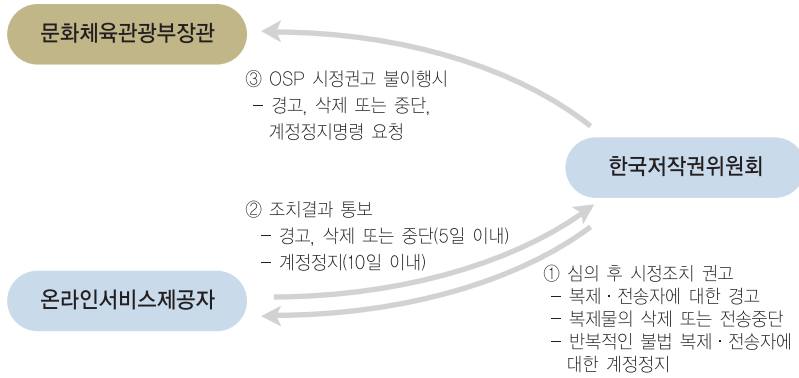
32.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법 제133조의3)

종전 저작권법	종전 컴법	개정법
<p>〈신 설〉</p>	<p>제34조의3 (시정권고 등)</p> <p>①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제34조의2 제1항 각 호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송한 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프로그램 또는 정보 삭제 3. 전송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p>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33조의3 (시정권고 등)</p> <p>①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p>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p>

종전 저작권법 시행령	종전 컴법 시행령	개정시행령
<p>〈신 설〉</p>		<p>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p> <p>①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법 행위의 내용 2. 권고 사항 3. 시정 기한 4. 시정권고 수락거부 시의 조치 <p>②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시정권고 이행 일자 3.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p>③위원회가 법 제133조의3제1항 제3호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72조의3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 ▶ 행정부의 시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에 OSP에게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정권고 제도를 신설
-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OSP의 정보통신망을 모니터링하여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1)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전송한 자의 계정 정지를 OSP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정권고를 받은 OSP는 1)과 2)의 시정권고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3)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 시정권고는 행정명령이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OSP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되지는 않음
- 다만, 이와 같은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행정명령을 하는 경우 다시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음

▶ 시정권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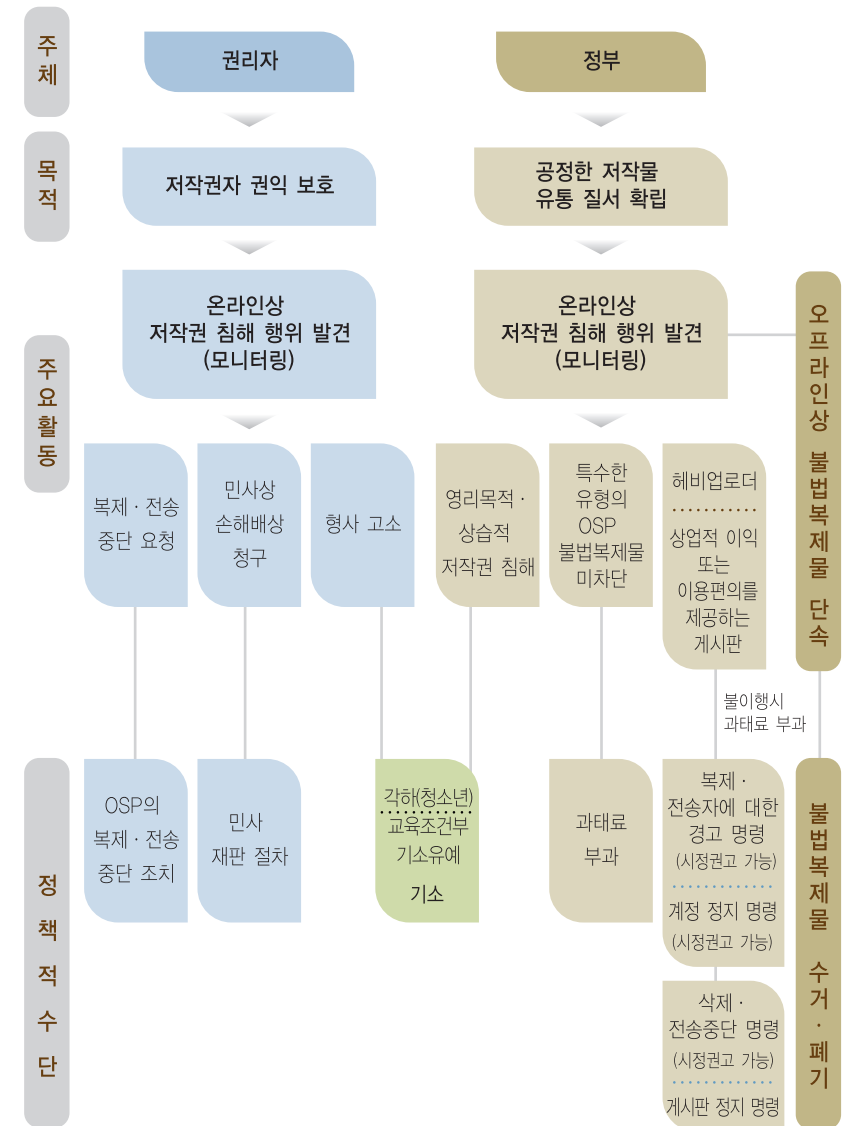


Q&A

Q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A 시정권고는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행정 명령을 받기 전에 자율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불이행한다고 하여 어떠한 제재 조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정권고 불이행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보호 체계도



33. 벌칙의 변화(법 제136조)

종전 저작권법	종전 컴법	개정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 것으로 한 자 3. ~ 6. (생략)	제46條 (罰則)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併科할 수 있다. 1. 第29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자 2. 第29條第4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行위를 한 자 3. 第30條의 規定을 위반한 자 ②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著作權委託管理業務를 한 자 2. 第29條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자 3. 第29條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자 4. 第29條第4項 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行위를 한 자 ④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著作權의 代理 또는 仲介業務를 한 자는 5百萬元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47條 (常習犯) 常習으로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한 자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7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併科할 수 있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 것으로 한 자 3. ~ 6. (생략)
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1~6. (생략)	②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著作權委託管理業務를 한 자 2. 第29條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자 3. 第29條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자 4. 第29條第4項 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行위를 한 자 ④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著作權의 代理 또는 仲介業務를 한 자는 5百萬元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1~6. (현행과 같음) 7. 제55조의2(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38조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생략)	제138조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현행과 같음)	제138조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현행과 같음)

-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저작권법상의 벌칙과 조화시킴
- ▶ 복제권 침해 등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형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 간접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등 일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형량보다 낮게 책정하였으며,
 - 허위 등록하는 경우 등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형량보다 강화하였음
- ▶ 벌칙이 강화 또는 약화된 이유는 양법의 벌칙 형량이 차이가 있던 것을 단일 양형체계로 정비한 것에 따른 것임

▶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변화표

내 용	종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저작권법	변화 내용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 (§29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6①)	동일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프로그램의 국내 배포목적 수입, 침해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지정취득후 업무상 사용 (§29④1,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6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36②_4)	감소
기술적보호조치 직접 무력화 (§30①)		불수용	-
기술적보호조치 간접 무력화 (§30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36②_5)	감소
비밀유지의무위반(§2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6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37_7)	감소
지정없는 위탁관리업무(§20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37_4)	동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29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6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37_1)	동일
허위등록·제출(§29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36②_2)	강화
권리관리정보(§29④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36②_6)	강화
신고없는 대리·중개업(§20②)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6④)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6④)	동일
상습범(§47)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47)	불수용	친고죄 규정으로 적용도록 하여 본 규정 불수용

34. 고소(법 제140조)

종전 저작권법	종전 컴법	개정법
<p>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p>第47條(常習犯) 常習으로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한 者는 7년이하의 懲役 또는 7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併科할 수 있다.</p>	<p>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제124조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 ▶ 인터넷 환경하에서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적 피해가 심각하나, 저작자인 '개인'이 그 침해사실을 일일이 알아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리+상습』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하여 2006년 저작권법 개정시 확대 규정하였음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저작권법의 고소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영리+상습』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가 적용됨
-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음

TIP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고소)를 하여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욕죄, 친족상도례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 한다.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35. 양벌규정(법 제140조)

종전 저작권법	종전 컴법	개정법
<p>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p>	<p>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양벌규정은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 이러한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양벌규정(헌법재판소 2007.11.29. 선고 2005헌가10) 및 「청소년보호법」 상의 양벌규정(헌법재판소 2009.7.30. 선고 2008헌가10)은 위헌이라고 결정
-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여 양벌규정을 개선함

V. 기대효과



- ▶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저작물에 대하여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원적 체계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추진 가능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둬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
- ▶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
- ▶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둬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



[부록] 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법률 제962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 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보호조치"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 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 나. 저작자·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 ②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제외한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삭 제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절 저작자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야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 (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 허락, 제57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 또는 제101조의6에 따른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반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9. 3. 25 / 시행일 2009. 9. 26)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 시행일 2009. 9. 26)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①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향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제25조·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42조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43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①제39조제1항 단서·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②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 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저작물을 작성

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 저작자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 ①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출판권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 ②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9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익을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제52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제55조 (등록의 절차 등)

①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 행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2. 등록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 (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 (권리자 등의 인증)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7절 출판권

제57조 (출판권의 설정)

①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8조 (출판권자의 의무)

①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

②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

③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출판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5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①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 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0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②복제권자는 출판권 존속기간 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

제61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①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②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경우에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63조 (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①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제23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28조·제30조 내지 제33조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출판권설정등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출판권등록부"로 본다.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64조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실연
 -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 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 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2. 음반
 -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 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3. 방송
 -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제65조 (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66조 (성명표시권)

- ①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 ②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 (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8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권리(이하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는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

제69조 (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0조 (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 (대여권) 실연자는 제70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2조 (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 (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①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④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6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①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본조 신설 2009. 3. 25 / 시행일 2009. 9. 26]

제77조 (공동실연자)

- ①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이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제15조의 규정은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78조 (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 (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 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 (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1조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5조제3항·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6조제3항·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3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9. 3. 25 / 시행일 2009. 9. 26]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84조 (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5절 저작권접권의 보호기간

제86조 (보호기간)

① 저작권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한다.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할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 저작권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할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할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제6절 저작권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

제87조 (저작권접권의 제한)

① 제23조·제24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32조·제33조제2항·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저작권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8조 (저작권접권의 양도·행사 등) 제45조제1항의 규정은 저작권접권의 양도에, 제46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제47조의 규정은 저작권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9조의 규정은 저작권접권의 소멸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89조 (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0조 (저작권접권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저작권접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권접권등록부"로 본다.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91조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92조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③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제23조·제28조 내지 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95조 (보호기간)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제9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제20조 단서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제45조제1항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제46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제47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8조의 규정은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제49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8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 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1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2 (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에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②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1조의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제101조의5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의6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①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③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⑤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⑥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제101조의7 (프로그램의 임치)

①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등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금지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8조 (감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제110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1조 (과징금 처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④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2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13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분쟁의 알선·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113조의2 (알선)

- ①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 ③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 ④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⑤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⑥알선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조정부)

- ①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의2 (조정 신청 등)

- ①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제115조 (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6조 (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제117조 (조정 성립)

- ①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 (조정비용 등)

- ①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 ②조정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19조 (감정)

-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 ①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 ②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 삭제

제122조 (경비보조 등)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 시행일 2009. 9. 26)

-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

(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②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 ③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④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1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32조 (수수료)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63조제3항·제90조·제98조 및 제101조의6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록 사항의 변경·등록부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삭 제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3조의3 (시정권고 등)

①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 제

제135조 (저작권재산권 등의 기증)

①저작권재산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재산권자들로부터 기증된 저작물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당해 저작권재산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등을 이용할 수 없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증 절차와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벌칙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권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2(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38조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139조 (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 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2조 (과태료)

-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3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④ 삭 제
- ⑤ 삭 제

부칙 [제9625호, 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립준비)

- ①이 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④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⑥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⑦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부터 제122조까지 및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권리·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승계한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5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프로그램의 이용은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법정허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1. 법정허락
2.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
3. 프로그램의 임치 및 수치인의 지정
4. 프로그램의 등록
5.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6. 부정복제물의 수거조치
7.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8. 분쟁의 알선·조정
9. 프로그램의 감정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으로 한다.
제150조의3제2항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규정에 의한"을 "「저작권법」에 따른"으로 한다.
- ②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으로 한다.
- ③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권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권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 ④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의2 및 제6조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록]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7.22, 시행일 2009.7.23, 대통령령 제2163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복제·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배포·공연·방송 및 전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견결정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지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회계)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지급 근거
2. 지급 기준 및 대상
3. 지급 방법
4.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처리 방법
5. 담당자 및 연락처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법 제25조제8항에서 “공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1.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 목적
4.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제10조(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 가. 제12조에 따른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 나. 도서관등의 이용자 외에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 다.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4.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 나. 점자도서관
 - 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좋은 눈의 시력(만곡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이 0.2 이하인 사람
 -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注視點)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를 말한다.

1.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제17조(출처 명시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조회 사항 등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제출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50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5일간 신청 내용을 관보에 공고할 것
 2.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음반제작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 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것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

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제22조(승인신청의 기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기각한다.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된 경우
3.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 하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4.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저작 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만 알린다.

제23조(보상금의 공탁)

- ①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3.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제25조(신청주의)

-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이나 촉탁이 있어야 한다.
-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으로 인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등록신청)

-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④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⑤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저작물의 제호
 3. 저작자 등의 성명
 4. 창작·공표 및 발행 연월일
 5.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6. 등록의 내용
- ② 저작권등록부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분실·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제1항의 착오나 누락이 등록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삼자에게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 ①제27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 등록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경 또는 경정하거나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등록의 직권말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된 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등록임이 확인된 경우
2.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신청의 반려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등록공보의 발행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 공보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4조(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2. 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생성·발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것
3.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갖춘 것

③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업무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의 종류
2. 인증기준
3.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4. 인증역무의 이용 조건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인증업무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한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인증 절차 등)

①법 제56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인증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저작물에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복제권자의 표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복제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다.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표지 및 복제권자의 검인
3. 출판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9조의2(임치기관)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위원회를 말한다.

제40조(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재(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41조(복제·전송의 중단 통보)

①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복제·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2조(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43조(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①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

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소속부서명
2.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제45조(권리자의 요청)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관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47조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①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2.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2.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승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0조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저작물등의 제호
2. 저작자, 실연자·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3. 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固定) 연도, 제작 연도

제51조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1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저작물등의 목록
2.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자 등과의 신탁계약기간
3. 사용료 등 이용조건 및 표준계약서

제52조(보고)

①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 (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 등)

①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은 법 제10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사유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일당 50만원으로 하고, 법 제109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일당 20만원으로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 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 (과징금의 사용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 사용용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알선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8조(위원의 대우 등)

- 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② 상근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근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12조의2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9조의2(알선)

-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라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② 제1항에 따른 알선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0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법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1조(조정절차 등)

- ① 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나머지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비용의 납부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④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조 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이 실시되는 경우 감정기간은 제5항의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2조(출석의 요구 등)

-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③위원회는 조정당사자 외의 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하면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63조(조정 불성립 등)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제61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 3.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64조(감정 절차 및 방법 등)

- ①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감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감정 대상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
 - 2. 침해에 관한 감정 요청의 경우에는 관련 저작물들의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 3. 그 밖에 위원회가 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 ②위원회는 감정을 하려면 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감정전문위원회에는 전문적인 감정을 위하여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④감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감정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조직·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 ①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관리·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 4.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 ①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업무의 위탁)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 2.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항에 따른 등록접수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신청의 접수업무(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위탁한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에 위탁한다.

제69조(수거·폐기·삭제 절차와 방법)

- ①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수거·폐기·삭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②관계 공무원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확인증을 내주고, 수거·폐기·삭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수거한 불법 복제물 등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다.

제70조(수거·폐기·삭제 업무의 위탁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그 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1조(수거·폐기·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3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저작물등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72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 절차와 방법) 위원회는 법 제133조의 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전송중단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의3(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2. 해당 복제·전송자가 복제·전송한 양
3. 게시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4. 불법복제물등이 저작물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복제·전송자의 계정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3.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실
4. 정지 기간

③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④제2항의 명령서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2. 해당 게시판의 개설 취지
3. 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4.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5. 불법복제물등이 차지하는 비율
6. 게시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7. 해당 게시판의 불법복제물등의 차단 노력 정도
8. 불법복제물등의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3. 위반 행위의 내용
4. 정지 기간

③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의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④법 제133조의2제5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정지 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게시판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의5(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복제·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명령 이행 일자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반 행위의 내용
2. 권고 사항
3. 시정 기한
4. 시정권고 수락거부 시의 조치

②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시정권고 이행 일자
3.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위원회가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72조의3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3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법 제134조제1항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공공기관 저작물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사업
3. 표준계약서 개발 등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4. 저작물의 공정이용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 제정 및 권장사업
5. 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4조 삭 제

제75조(기증 절차)

①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기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서약서와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증저작물 등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적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①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4. 그 밖에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계획서
2.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절차 및 활성화 계획을 기재한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135조제3항에 위배된 경우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②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저작권접권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저작권등” 이라 한다)”을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이하 “저작권등” 이라 한다)”으로 하고, “상표법,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으로 한다.

③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소프트웨어의 관리·유통 전담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바목을 삭제한다.

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⑥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

⑦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⑧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 및 법 제1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과태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음악, 영화, 방송, 어문제작물, 게임, 그 밖의 저작물 등 6개 분류에 의해 각각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2가지 분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후의 동일 분류 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라.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불법복제물 등의 차단 노력 정도,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5% 미만	경고
5% 이상 ~ 15% 미만	300
15% 이상 ~ 30% 미만	700
30% 이상 ~ 45% 미만	1,000
45% 이상 ~ 60% 미만	1,500
60% 이상 ~ 75% 미만	2,000
75% 이상	2,500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 및 법 제14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가. 법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1호	경고	500	1,000
나.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2호	100	300	500
다. ㄴ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	100	300	500
라.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	300	500	700
마.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계정 정지 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	500	700	1,000
바.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100	200	300
사.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300	500	700



[부록]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7.24, 시행일 2009.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같은 표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회사항 등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물의 제호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7.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공고자 및 연락처

제4조(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3.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4.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보상금 공탁의 공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탁사실을 공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4. 공탁금액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공탁근거
7.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성명

제6조(등록신청서)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하는 출판권, 저작권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 등의 등록
 - 가. 저작권의 등록 :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프로그램의 개요)
 - 나. 삭제
 - 다. 저작권접권의 등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작권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작권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작권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권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 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별지 제11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2. 권리변동 등의 등록
 - 가.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권 권리변동 등의 등록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등록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요)

- 나. 저작권접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작권접권(실연)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권접권(음반)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작권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 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변동등록신청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2.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자·저작권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4. 저작물·저작권접물·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출하는 때에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 ①위원회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제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용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봉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복제물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로 봉합을 대신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등록된 프로그램의 멸실·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봉합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일시적으로 개봉하여 별도의 매체에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한 후에는 지체없이 다시 봉합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의 복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 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하며, 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출판권, 저작권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등록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작권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
2. 프로그램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3. 출판권등록부 : 별지 제22호서식
4. 저작권접권등록부 : 별지 제23호서식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별지 제24호서식

제8조(등록증)

①위원회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 제6항에서 준용하는 출판권, 저작권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다)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서식의 저작권등록증
1의2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증
2. 출판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6호서식의 출판권등록증
3. 저작권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저작권접권등록증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를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5. 저작재산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5의2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증
6. 저작권접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②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 등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①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 또는 말소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경우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제10조(등록부 열람 등)

①영 제34조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경우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①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록부로 본다.

②등록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 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신청인·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인증신청서 등)

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다음 각 호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2.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②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권리인증서 : 별지 제39호서식
2. 이용허락인증서 : 별지 제39호의2서식

제13조(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서) 영 제40조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에 영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복제·전송의 중단 통보서)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2조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복제·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제·전송 재개통보서에 복제·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영 제45조에 따라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조치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영 제45조 각 호의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2.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①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실적서
가. 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내역
나.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 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활용계획
나. 예산안

②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저작물 등의 대리 중개를 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제21조(납입고지서)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과징금 부과·징수대장) 영 제5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징수 대장에 기록한다.

제23조 (수수료)

- ①법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②국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 (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 ③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저작자가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권등록을 신청하거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4조(수거확인증 등)

- ①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 ②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 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표시 증표)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권한표시 증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삭제·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 ①영 제72조의2, 제72조의3제2항 및 제72조의4제2항에 따른 삭제·전송중단 등의 명령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 ②영 제72조의5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7조(장부의 작성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삭제·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저작권재산권등 기증서약서)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 등의 저작권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기증저작재산권 등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록] 폐지 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폐지 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8.2.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2.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복제"라 함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표"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공중(공중)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5의2. "배포"라 함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발행"이라 함은 공중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전송"이라 함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권리관리정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실행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 가.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정보
 - 나.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 및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 다.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9. "기술적보호조치"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10.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 ①이 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언어 :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 ②제작된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

제4조 (프로그램제작자의 추정)

- ①원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프로그램을 공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제작자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널리 알려진 아호·약칭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프로그램제작자로 추정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제작자의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공표자 또는 발행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제5조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

제6조 (외국인의 프로그램)

- ①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프로그램저작권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 ②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창작한 프로그램과 맨처음 대한민국 안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프로그램(외국에서 발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안에서 발행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프로그램저작권

제7조 (프로그램저작권)

- ①프로그램제작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 ②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③프로그램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8조 (공표권)

- ①프로그램제작자는 그 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프로그램제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제작자가 그 상대방에게 프로그램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③프로그램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 원프로그램제작자의 동의를 얻어 창작된 개작프로그램이 공표된 때에는 개작에 원용된 원프로그램의 부분에 한하여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성명표시권)

- ①프로그램제작자는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의 공표를 함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 ②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는 프로그램제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프로그램제작자가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동일성 유지권) 프로그램제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제호·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11조 (공동저작프로그램)

①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하 "공동저작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의 공유로 하며, 그들의 공유지분은 공동저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②공동저작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공동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③공동저작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하거나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동저작권자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에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제12조의2 (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제13조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

①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그 금액을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 등)

①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하는 자는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할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할 권리가 당해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 ①프로그램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②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해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

①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

이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안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③프로그램저작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설정할 수 있다.

④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들은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양도할 수 없다.

⑤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3년간 존속한다.

제17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①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사용)

①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을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프로그램저작권자를 위하여 공탁한 후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실과 그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프로그램의 거래에의 제공)

①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들의 허락을 받아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지정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프로그램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전문기관(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위탁관리기관의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프로그램의 임치)

①프로그램저작권자와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의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저작권의 행사 등)

①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저작권은 질권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②프로그램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프로그램의 양도 또는 대여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락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전의 지급 또는 물건의 인도전에 지급될 금전이나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2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소멸) 프로그램저작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프로그램저작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3장 등록

제23조 (프로그램의 등록)

①프로그램저작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프로그램의 명칭
2. 프로그램저작자의 국적·실명 및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로 한다)
3. 프로그램의 창작연월일

4. 프로그램의 개요

5. 프로그램의 공표연월일(프로그램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연월일)

6. 그 밖에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프로그램제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제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삭 제

④삭 제

⑤삭 제

⑥삭 제

제24조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①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시에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때에는 그 등록된 프로그램제작자를 프로그램제작자로, 그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그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 창작 후 1년이 경과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창작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③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 설정
2.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3.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②삭 제

제26조의2 (등록절차 등)

①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프로그램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공보를 발행하여 그 등록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공보의 발행,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복제물의 접수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프로그램등록)

①프로그램등록 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26조의2제1항의 프로그램등록부 및 제26조의2제2항의 프로그램공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적 매체로 프로그램 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 사무의 처리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제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출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④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등의 폐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손해배상청구)

①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33조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공동저작프로그램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4조 (부정복제물등의 수거조치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정보 또는 기기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삭제·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유통 또는 사용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한 프로그램
2. 삭 제
3.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업무상 사용하는 프로그램
4. 삭 제
5.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를 행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 장치, 부품, 프로그램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프로그램 또는 기기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수거등을 함에 있어서 기술적 자문 및 이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또는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협회 등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삭 제

제34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이하 "거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전송한 프로그램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및 정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의3 (시정권고 등)

①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전송한 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프로그램 또는 정보 삭제
3. 전송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이 정당한 권원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전송됨으로써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프로그램을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는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재(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의 침해에 대한 책임 및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⑥정당한 권원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행위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가 침해됨을 알고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5장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제35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①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에 대하여 알선·조정하고, 프로그램저작권 그 밖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며, 프로그램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프로그램저작권 그 밖에 프로그램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4.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프로그램저작권 그 밖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조사연구를 위하여 연구실을 둔다.

제36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분쟁에 대한 알선·조정
2.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의 운영,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5.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지원
6.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
7.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8.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9. 그 밖에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6조의2 (알선)

①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의3 (알선의 중단)

①알선위원은 알선으로써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②알선중인 분쟁에 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36조의4 (알선의 성립)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7조 (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38조 (조정 신청 등)

①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행한다.

③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월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의2 (감정)

①위원회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양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외에 법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때에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 (출석의 요구)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0조 (조정 성립)

- ① 조정은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조정비용)

- ①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 ② 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42조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 (위원회의 조직등)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알선·조정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4조 삭제

제4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 (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체신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업무를 한 자
2.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④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업을 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8조 (고소) 제46조제1항(제3호의 경우중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조 제3항제2호·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제25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1조 (과태료)

①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6) 까지 생략

(437)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4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4조의3제3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호·제4호, 제45조의2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5조의2 본문 중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체신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4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록] 저작권법 연혁

▶ 제정(1957. 1. 28. 법률 제432호)

▶ 전 5장, 본문 75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

▶ 주요내용

- 저작권법의 목적이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 하려는 것임을 명시
- 무방식주의(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발생) 채택
- 저작권 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30년으로 함
- 저작권에 관한 전반적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저작권심의회 설치
- 저작권 양도 등은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의 저작권은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보호되되,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보호함
-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3천부로 추정함
- 음반·녹음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에 사용하는 것 등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
-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기타의 법령을 적용함
-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받음으로써 타인에게 손실을 가한 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함
-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등

제1차 개정

(전부 개정 1986. 12. 31. / 1987. 7. 1. 시행 / 법률 제3916호)

▶ '세계저작권협약(UCC)' 등 국제조약 가입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 보호 및 제한 규정 등 정비

▶ 전 9장, 본문 103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

▶ 주요내용

-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임을 명시
- 관련 용어 정의, 저작물 예시를 현실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규정함
- 외국인 저작물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소급효 불인정)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법률로 정함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정(1986.12.31. / 1987.7.1.시행 / 법률 제3920호)
- 법인·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에는 그 법인·단체 등이 되도록 함
- 저작재산권을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
- 저작권 보호기간을 외국의 입법례에 맞추어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으로 함
-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법정허락 도입
- 저작인접권을 신설, 보호기간을 20년으로 함
 - * 실연자 - 녹음·녹화·촬영권, 실연방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보상청구권 인정
 - * 음반제작자 - 복제·배포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보상청구권 인정
 - * 방송사업자 -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 인정
- 영상저작물 특례조항 신설
- 저작권위탁관리업(신탁관리, 대리중개) 제도 신설, 허가제로 함
- 저작권심의회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
 - *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 각종 보상금의 기준에 관한 심의 등 담당
- 저작권자에게 침해 방지 및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부정복제물의 부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출판물은 5천부, 음반은 1만매로 추정하도록 함
-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 제2차 개정(일부개정 1989. 12. 30. / 법률 제4183호)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행정조직의 명칭 변경
(문화공보부장관 ▶ 문화부장관)

▶ 제3차 개정(일부개정 1990. 12. 27. / 법률 제4268호)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행정조직의 명칭 변경
(문교부장관 ▶ 교육부장관)

▶ 제4차 개정(일부개정 1991. 3. 8. / 법률 제4352호)

▶ 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변경
(도서관법 ▶ 도서관진흥법)

▶ 제5차 개정(일부개정 1993. 3. 6. / 법률 제4541호)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행정조직의 명칭 변경
(문화부장관 ▶ 문화체육부장관)

▶ 제6차 개정(일부개정 1994. 1. 7. / 1994. 7. 1. 시행 / 법률 제4717호)

▶ 한미지적재산권협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침해 등에 대한 벌칙 상향조정 등 저작권보호 강화

▶ 주요내용

-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보호
- 교과용도서 보상금 신설(경과조치로 5년간 유예기간을 둠)
- 음반의 대여권 인정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 저작권위탁관리업중 대리·중개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 불법 저작물을 배포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봄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등으로 상향조정

▶ 제7차 개정(일부개정 1994. 3. 24. / 법률 제4746호)

-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변경
(도서관진흥법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 제8차 개정(일부개정 1995. 12. 6. / 1996. 7. 1. 시행 / 법률 제5015호)

- ▶ WTO TRIPs 내용 반영 및 베른협약 가입 등을 위해 저작권보호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재정비

▶ 주요내용

- 외국인의 저작권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보호함
 - * 조약발효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 저작물에 대해 소급 보호 인정
 - * 개정법 시행 전의 외국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행위에 대하여는 면책 인정
- 단체명의 저작물의 창작 후 공표유예기간을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 번역권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강제허락제도 폐지
- 실연자의 녹음·녹화·촬영권을 복제권으로 확대

▶ 제9차 개정(일부개정 1997. 12. 13. / 법률 제5453호)

- ▶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저작권 위탁관리업 허가 취소 등의 경우 청문제도 도입

▶ 제10차 개정(일부개정 2000. 1. 12. / 2000. 7. 27. 시행 / 법률 제6134호)

- ▶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복사기기의 확대보급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 이용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외 저작권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

▶ 주요내용

- 저작자에게 전송권 부여
-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사적복제 면책범위에서 제외(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함)
-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도서관 면책 범위 확대
 - * 도서관내, 도서관 간 전송의 경우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보상금 지급)
- 저작권 등록사항 확대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 제11차 개정(일부개정 2003. 5. 27. / 2003. 7. 10. 시행 / 법률 제6881호)

-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 노력을 보호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 관리정보 등을 통해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지털 시대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라도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 보호함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보호기간을 5년으로 함
- 도서관보상금제를 도입하고 도서관의 복제·전송의 범위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 범위내로 한정
-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어문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 전용기록 방식으로 복제·배포·전송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고 즉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등을 정함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을 권리 침해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부정복제물(출판, 음반)의 부수추정 규정을 삭제, 변론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제12차 개정

(일부개정 2004. 10. 16. / 2005. 1. 17. 시행 / 법률 제7233호)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 부여

제13차 개정(일부개정 2006. 10. 4. / 법률 제8029호)

▶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변경 (도서관및독서진흥법 > 도서관법)

제14차 개정

(전부개정 2006. 12. 28. / 2007. 6. 29. 시행 / 법률 제8101호)

▶ 전 11장, 본문 142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

- ▶ 1957년 법 제정 이래 잦은 개정으로 흐트러진 법체계를 바로 잡고, WIPO실연 음반조약 등 국제조약 가입을 위해 저작권접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산업의 발전 촉진

▶ 주요내용

- 각종 정의규정 신설 또는 변경(저작물의 개념 확대,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신설, 발행의 정의 변경, 공중의 정의 신설 등)
- 학교 수업목적을 위한 전송 허용
- 각종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 법정허락 대상에서 외국인 저작물 제외
- 저작권인증제도 도입
- 보호받는 음반의 범위 확대
- 실연자의 인격권, 배포권, 생실연(生實演, Live 공연) 공연권 등 인정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대여권 강화
- 외국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방송보상청구권 인정(상호주의 적용)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 신설
- 음반의 보호기간 기산점을 '고정'에서 '발행'한 때로 변경함으로써 저작권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요건 및 과징금 처분 규정 신설, 의무강화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저작권위원회로 변경, 역할 강화
- 저작권위원회의 감정 제도 도입
- 문화관광부장관의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중단 명령 도입
-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규정 신설
 - *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 *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제도 도입
- 영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비친고죄 적용

▶ 제15차 개정(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행정조직의 명칭 변경 (문화관광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제16차 개정

(일부개정 2009. 3. 25. / 2009. 9. 26. 시행 / 법률 제9529호)

- ▶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을 위하여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함
- ▶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일정시설에 한하여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규정함

- ▶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제17차 개정

(일부개정 2009. 4. 22. / 2009. 7. 23. 시행 / 법률 제9625호)

- ▶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의 장 신설

- ▶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의 삭제, 이용자에 대한 경고, 계정 정지, 게시판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제도 도입

▶ 주요내용

-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
 - * 프로그램의 보호 대상
 - *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
 - *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 * 정당한 이용자의 보존을 위한 복제
 - * 프로그램베타적발행권
 - * 프로그램의 임치
-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
-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
 - *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 반복적인 불법 복제·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 *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 * 불법복제물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부록]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연혁

▶ 제정(1986. 12. 31. / 법률 제3920호)

- ▶ 전 6장, 본문 37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

▶ 주요내용

- 프로그램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함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관련 용어를 정의
- 외국인의 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상호주의
-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 프로그램저작자에게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과 프로그램의 복제·개작·번역·배포 및 발행권 등 부여
- 프로그램저작자의 권리는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
- 재판, 사적복제 등 프로그램저작권 제한
- 프로그램 등록 제도
-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프로그램의 이용·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프로그램심의위원회
-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 제1차 개정(일부개정 1989. 12. 30. / 법률 제4183호)

-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행정조직의 명칭 변경
(문화공보부장관 ▶ 문화부장관)

▶ 제2차 개정(일부개정 1993. 3. 6. / 법률 제4541호)

-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행정조직의 명칭 변경
(문화부장관 ▶ 문화체육부장관)

▶ 제3차 개정(일부개정 1994. 1. 5. / 법률 제4712호)

▶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의 보호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량을 높여 벌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프로그램분쟁에 대한 조정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맡아 전문적이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

▶ 주요내용

-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을 "3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 "프로그램심의위원회"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개편하여 프로그램저작권등의 분쟁에 관한 사전조정제도를 도입
-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법인에게 귀속
-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당해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부여
-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컴퓨터에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도 당해 프로그램의 침해행위로 간주

▶ 제4차 개정(일부개정 1995. 12. 6. / 법률 제4996호)

▶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TRIPs)이 발효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프로그램저작권 관련제도를 정비

▶ 주요내용

-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기간을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50년간'에서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연도부터 50년간'으로 변경
- 정보통신부장관이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의 이용 촉진을 도모
-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

▶ 제5차 개정(일부개정 1998. 12. 30. / 법률 제5605호)

▶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자 보호를 강화

▶ 주요내용

- 전송권 신설
- 교과용 도서에 컴퓨터프로그램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부담을 경감
- 컴퓨터프로그램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자 등에 관한 정보인 저작권관리정보에 대한 보호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금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 제6차 개정(전부개정 2000. 1. 28. / 법률 제6233호)

▶ 전 7장, 본문 50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내용 반영 등 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

▶ 주요내용

- 프로그램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보호조치를 제거·회피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
- 프로그램 역분석
- 프로그램불법복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 관계공무원에게 단속권 부여

▶ 제7차 개정(일부개정 2001. 1. 16. / 법률 제6357호)

▶ 컴퓨터프로그램코드의 역분석을 일정한 범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국제적인 입법례를 반영

▶ 주요내용

- 컴퓨터프로그램코드의 역분석을 일정한 범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프로그램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에 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부여

▶ 제8차 개정(일부개정 2002. 12. 30. / 법률 제6843호)

▶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는 프로그램 배타적전송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프로그램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범위를 정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주요내용

- 프로그램 전부 양도시 개작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
- 프로그램배타적 전송권을 추가
- 프로그램의 임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명령(취급의 거부·정지·제한) 및 과태료(5백만원) 부과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감면
- 분쟁해결을 위한 알선
- 프로그램 감정

▶ 제9차 개정(일부개정 2005. 12. 29. / 법률 제7796호)

▶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 제10차 개정(일부개정 2006. 10. 4. / 법률 제8032호)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의 유통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 주요내용

- 등록 및 공보 관련 규정의 정비
- 창작 후 1년이 경과한 프로그램의 등록 허용
- 프로그램저작자의 등록 사항 변경
- 오프라인에서의 부정복제물과 정보통신망에서의 부정복제물 분리 규정 및 시정명령 대상 명확화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권고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기능강화
-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강화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향 조정
 - * 상습범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 제11차 개정(일부개정 2008.2.29. / 법률 제8852호)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행정조직의 명칭 변경
(문화관광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폐지(폐지 2009.4.22. / 법률 제9625호 / 시행일 2009.7.23)

▶ 저작권법과 통합됨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폐지

[집필진]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신종필
문화체육관광부 장진숙
한국저작권위원회 최경수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현철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남성현

펴낸곳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한국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실)

발행 : 2009년 8월

디자인 : 디자인포레버

인쇄 : 문양사

*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이 책의 내용을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람에 개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